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2 선고 2020가단1383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,986,301원 및 그 중 2억원에 대하여 2020. 4. 4.부터 2020. 6. 10.까지 연 9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보험자 E(주) 지급보증(사용대금) 보험금 지급 구상 청구.

판사이형주